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화약류 폐기 신고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5일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수입허가 번 호	
화 약 류 저장위치	

폐기 일시	
폐기 장소	
폐기 방법	
폐기 사유	

폐 기 책임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의 폐기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폐기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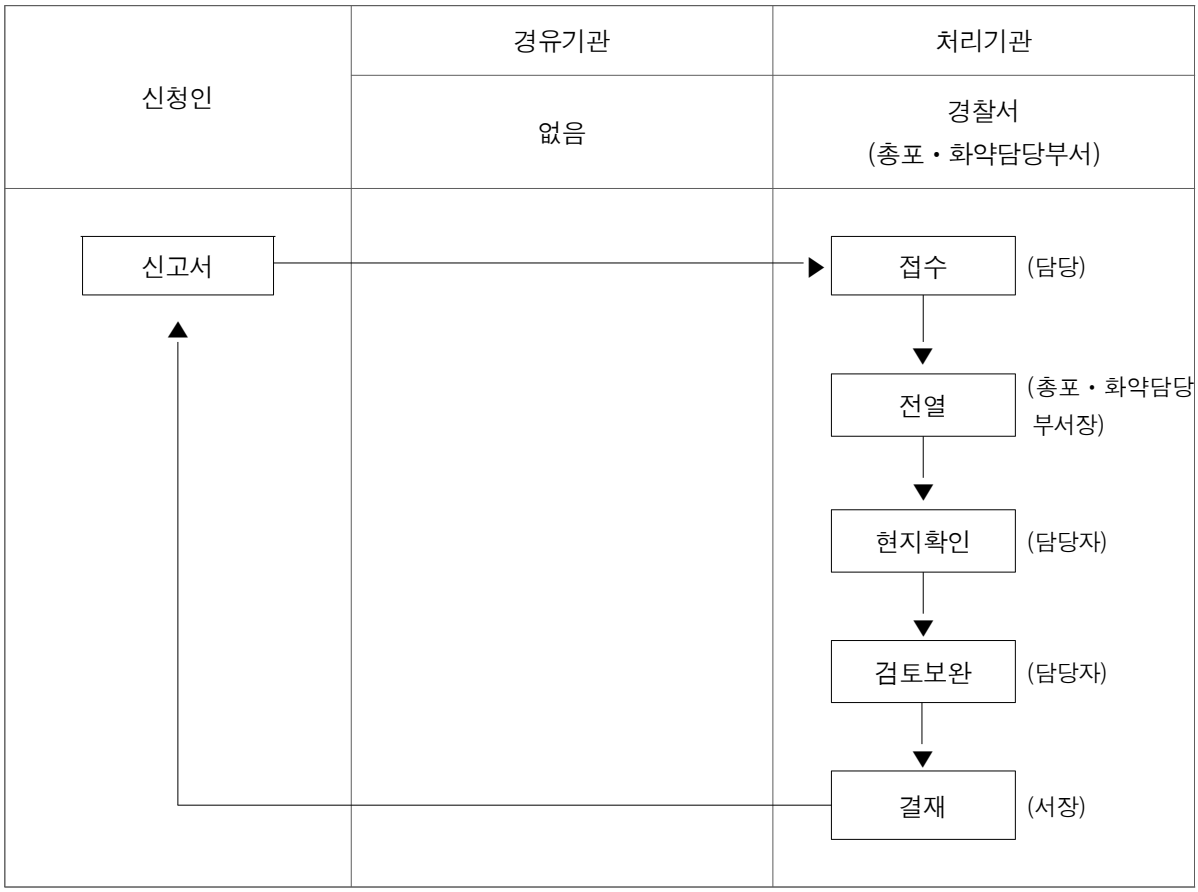
유의사항

◈ 폐기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폐기작업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
2. 방법, 일시, 장소의 적부에 관한 사항
3. 작업인원에 관한 사항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처리절차


신청인
경유기관
없음
처리기관
경찰서
(총포・화약담당부서)
신고서
접수
(담당)
전열
(총포・화약담당 부서장)
현지확인
(담당자)
검토보완
(담당자)
결재
(서장)